

1. 개정이유

전자우편을 통한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,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해 세법해석 등을 신청한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방법 현행화(안 제4조제4항)

- (현행)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방법을 우편·팩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한정하고 있음
- (개선방안) 전자우편을 통한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함

나. 조직개편 반영(안 제5조, 제7조, 제9조 제5항, 제10조, 제11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제1항)

- (현행) '22.12.27. 개정 전 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에 따라 접수 및 배분 등 조세 법령 해석 관련 업무를 조세법령 운용과장이 담당함
- (개선방안) 직제 개편을 반영하여 조세정책과장이 조세 법령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

다.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(안 제10조제2항 신설)

- (신설) 불복 중인 사안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 및 예외 사유 규

정

라. 세법해석 사례 공개방법(안 제14조)

- (현행)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
- (개선방안) 납세자의 개인정보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,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세청, 관세청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

일부개정훈령안

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이란”을 “이란 제1호에 따른 세법,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조3제3항”을 “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조의3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우편·팩스”를 “우편·팩스·전자우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조세법령운용과장”을 “조세정책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세법령운용과장 이외”를 “조세정책과장 이외”로, “조세법령운용과장에 게”를 “조세정책과장에 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세법령운용과장은”을 “조세정책과장은”으로, “조세법령운용과장이”를 “조세정책과장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조세법령운용과”를 “조세정책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조세법령운용과장이 질의”를 “조세정책과장이 질의”로, “조세법령운용과장이 해당”을 “조세정책과장이 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조세법령운용과장”을 “조세정책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조세법령운용과”를 “조세정책과”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조세법령운용과장”을 “조세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중전의 제1항) 전단 중 “조세법령운용과장”을 “조세정책과장”으로, “조세법령운용과장이”를 “조세정책과장이”로, “있고,”를 “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중전의 제1항) 후단 중 “조세법령운용과장”을 “조세정책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「국세기본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정립된 판례나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있는 경우
2. 세법 등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
3. 해당 불복 등의 절차가 끝난 경우

제11조 중 “조세법령운용과장”을 “조세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조세법령운용과장”을 각각 “조세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해석 사례 공개) 조세정책과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한 세법 등 해석 사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조세법령운용과장”을 “조세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세법 등”이란 「관세법」,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, 「임시수입부가세법」, 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」,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이란 제1호에 따른 세법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4조(세법 등 해석의 신청) ① · ② (생 략)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이하 “필수 첨부서류”라 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	제4조(세법 등 해석의 신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

1. (생략)

2. 국세청장·관세청장이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법 등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질의자가 국세청장·관세청장에게 제출한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

④ 신청서는 우편·팩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.

제5조(접수 및 배분) ① 제4조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조세법령운용과장이 접수한다.

② 조세법령운용과장 이외의 과장이 제4조에 따른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조세법령운용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③ 조세법령운용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질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세법 등의 조항(이하 “대상 규정”이라 한다)을 소관하는 과장(이하 “법령 소관과장”라 한다)에게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조의3제3항 -----

④ ----- 우편·팩스·전자우편 -----.

제5조(접수 및 배분) ① -----

----- 조세정책과장 -----
-----.

② 조세정책과장 이외 -----

----- 조세정책과장 -----

③ 조세정책과장은 -----

이를 송부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과장과 협의하여 조세법령운용과장이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소관과에 계류 중인 세법 등 해석 질의의 건수 및 증감 추세 등을 고려하여 조세법령운용과를 담당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

④ 제3항에 따라 조세법령운용과장이 질의를 법령 소관과장에게 송부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세법령운용과장이 해당 질의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.

제7조(이송 및 반려) ① 담당과장은 처리하여야 할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청장·관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, 이 경우 그 사실을 질의자에게

----- 조세정책과장이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조세정책과 -----

④ ----- 조세정책과장이 질의 -----

----- 조세정책과장이 해당 -----
-----.

제7조(이송 및 반려) ① -----

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세법령운용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질의자에게 반려할 수 있고, 이 경우 그 사유를 질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세법령운용과에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제9조(신청 등의 취하) ① ~ ④ (생략)

⑤ 담당과장은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조세법령운용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세법 등 해석의 검토) ①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세법 등 해석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조세법령운용과장 (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세법령운용과장이) 담당과장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각 법령 소관과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

----- 조세정책과장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조세정책과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신청 등의 취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조세정책과장-----

제10조(세법 등 해석의 검토) -----

----- 조세정책과장-----

----- 조세정책과장이 -----

----- 있다. -----

같다)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조세법령운용과장은 7일 이내에 그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 조세정책과장-----

②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「국세기본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정립된 판례나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있는 경우
2. 세법 등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
3. 해당 불복 등의 절차가 끝난 경우

제11조(회신문의 통지) 담당과장은 세법 등 해석의 질의에 대한 검토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세법령운용과장에게 이를

제11조(회신문의 통지) -----

----- 조세정책과장-----

<p>지체 없이 공람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업무협조) ① <u>조세법령운용과장은 세법 등의 해석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조세법령운용과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법령 소관과장은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	<p>-----.</p> <p>제13조(업무협조) ① <u>조세정책과장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<u>조세정책과장</u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4조(해석 사례집의 발간) <u>조세법령운용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직전 연도에 처리된 세법 등 해석 사례 중 주요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한다.</u></p>	<p>제14조(해석 사례 공개) <u>조세정책과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한 세법 등 해석 사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5조(세법 개정과의 연계) ① <u>조세법령운용과장은 세법 등의 해석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법 등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법령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5조(세법 개정과의 연계) ① <u>조세정책과장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